

# 제1절 재화의 공급

## 1. 재화의 공급(본래의 재화의 공급)

-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
-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 공기 등과 어음·수표 등의 화폐대용증권과 주식·사채 등의 유가증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재화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 또는 법률상(공매, 경매, 수용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 2.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이란 재화의 공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 ※ 재화의 간주공급의 유형

| 간주공급의 유형  |                                 | 취지  |
|-----------|---------------------------------|---|
| 자기공급      | 면세사업 전용                         | 면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유지                                  |
|           | 소형승용자동차 및 그 유지를 위한 재화의 비영업용 전용  | 공제불능사업자와의 과세형평유지                                |
|           |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충괄납부.사업자 단위과세는 제외) | 납부와 환급의 시차로 인한 자금부담의 제거<br>과세당국의 사업장별 관리상의 편의도모 |
| 개인적 공급    | 소비행위에 대한 과세형평                   |   |
| 사업상 중여    | 소비행위에 대한 과세형평                   |   |
| 폐업시의 잔존재화 | 예상되는 소비에 대한 과세, 소비행위에 대한 과세형평   |   |

※ 자기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간주공급으로 의제.

그 외 간주공급은 당초 매입시점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해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 세금계산서 교부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교부할 필요 없다.

## 제2절 용역의 공급

-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service)를 제공하거나
  -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용역공급으로서 관세거래가 되기 위한 요건
  - 용역은 제공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며 소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소비 또는 소유권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요건                   | 내용                            | 용역의 공급이 아닌 사례  |
|----------------------|-------------------------------|--|
| 재산적 가치있는<br>역무·기타 행위 | 한정적으로 열거된 용역제공사업의 공급          | 손해배상금, 대가관계 없이 받는 특별회비, 고용에 의한 근로                                    |
| 대가수반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인도·양도 | 무상공급(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 거래상대방 존재             | 타인에게 제공                       | 자가공급   |
| 국내공급                 | 사업자에 의한 국내공급                  | 국외거래(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국외공급은 관세거래임)                                       |

# 제3절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의 행사권이 미치는 곳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 물품(단, 선적되지 않은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음)

##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우리나라의 영토 중 관세의 부과를 유예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구역을 통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과세여부            |
|--------------------------------|-----------------|
| 외국->보세구역                       | ×               |
| 보세구역->보세구역<br>보세구역 외의 장소->보세구역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보세구역->보세구역 외의 국내장소             | ○(재화의 수입)       |

# 제4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 1.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다음의 재화와 용역을 말함.

###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예: 쌀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쌀 운송용역)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용역(예: 자동차 공급 시 제공하는 보증수리용역)

###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2.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취급

(1)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면세·과세여부

-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고, 주된 거래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
- 주된 재화·용역의 과세여부에 따름

| 주된 재화·용역 | 부수 재화·용역 | 과세·면세 여부 |
|----------|----------|----------|
| 과세       | 과세대상     | 과세       |
|          | 면세대상     | 과세       |
| 면세       | 과세대상     | 면세       |
|          | 면세대상     | 면세       |

## (2)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면세·과세여부

- 사업에 부수되는 것이지 거래에 부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봄.

### ① 우발적 또는 일시적 공급(면세우선주의)

예) 금융보험업자(면세사업)가 지점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건물의 매각은 면세함.  
과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면세대상)한 경우 그 토지의 매각은 면세함

| 주된 사업 | 부수 재화·용역 | 과세·면세 여부 |
|-------|----------|----------|
| 과세    | 과세대상     | 과세       |
|       | 면세대상     | 면세       |
| 면세    | 과세대상     | 면세       |
|       | 면세대상     | 면세       |

②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부산물)

:주산물이 과세이면 과세, 주산물이 면세이면 면세임

-취지: 주된 사업은 과세대상이고, 필수부산물은 면세인 경우 이를 별도로 처리하면 경영사업자가 되어 복잡한 안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편의를 위해 단일업종으로 취급

- 예:참치통조림제조업자(과세)가 참치통조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참치알(면세)을 판매하는 경우 참치알도 과세/복숭아통조림제조업자(과세사업)가 필수부산물인 복숭아씨(면세)를 판매하는 경우 복숭아씨도 과세함/밀가루생산업자(면세)가 필수부산물인 밀기울(과세)을 판매하는 경우 밀기울도 면세함

# 제5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1. 공급시기

- 의미 : 공급시기는 과세거래를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것인지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및 거래징수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 1) 재화의 공급시기

|    | 구분               | 공급시기            |
|----|------------------|-----------------|
| 원칙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위의 규정 적용 불가능한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구분                    |  | 공급시기  |               |
|-----------------------|--|---|---------------|
| 거래<br>형태별<br>공급시<br>기 |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 장기할부판매 <sup>1</sup> . 완성도기준지급 <sup>2</sup> . 중간지급 조건부공급 <sup>3</sup> . 전력<br>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br>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                       | 반환조건부.동일조건부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조건성취. 기한경과로 판매확정되는 때  |               |
|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                       |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br>때,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의 경우 반출하는 때) |               |
|                       |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인취하는 때  |               |
|                       | 수출   | 인국반출(직수출,대행수출 <sup>4</sup> ). 중계무역 <sup>5</sup>             | 선(기)적일        |
|                       |  |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sup>6</sup>                                   | 공급가액 확정시      |
|                       |  | 위탁가공무역 <sup>7</sup> . 인국인도수출 <sup>8</sup> .                 | 외국에서 당해재화 인도시 |
|                       | 수입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공급하는<br>경우  | 수입신고수리일   |               |
|                       |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 수탁자. 대리인이 공급하는 때  |               |
|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br>에 도래하는 경우  | 그 폐업일   |               |
|                       | 그 밖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

## 2) 용역의 공급시기

| 구분   | 공급시기                        |
|--|-----------------------------|
| 원칙(통상적인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br>공급.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간주임대료, 선수임대료 중 기간경과분<br>미수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br>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
| 위의 규정 적용 불가능한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 폐업 전 공급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예 :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등)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폐업시 잔존재화와의 이동점
  - 같은 점 :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동일
  - 다른 점 : 과세표준(폐업 전 공급 : 계약에 의한 공급가액,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현재의 시가)

## 2. 재화와 용역의 거래장소(공급장소)

거래장소는 우리나라 관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거래장소가 국내이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국외이면 과세할 수 없음.

### • 거래장소

| 구분  |                 | 거래장소(공급장소)                          |                      |
|-----|-----------------|-------------------------------------|----------------------|
| 재 화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
|     |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 | 공급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
| 용 역 | 일반적인 경우         |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재화. 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
|     | 국제              | 비거주자. 외국법인                          | 여객탑승 또는 화물적재장소       |
|     | 운송*1            | 거주자. 내국법인                           | 비행기. 선박(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

#### \*1 국제운송용역

①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우

• 원칙: 과세 ×

• 예외: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국내이면 과세(상호주의 대상이면 ○세율, 그렇지 않으면 10% 과세)

② 거주자.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우: 탑승장소 또는 적재장소와 무관하게 과세(○세율)

-> 선박 · 항공기를 우리나라 관세권이 미치는 장소로 봄